

## 1709 사단법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⑦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염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⑧사원 개인에게까지 ⑨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⑩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⑪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⑫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⑬‘법인격 부인론’이 제기 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범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여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 ②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 ③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 없이 존속한다.
- ⑤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 2. 윗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 ② 일인 주식회사는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 ③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 ④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 ⑤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

## 3. ①~⑤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 ② ② :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 ③ ③ :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 ④ ④ :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 ⑤ ⑤ :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 4.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 ③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 ④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 ⑤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 5.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겸비(兼備)하면 | ② 구비(具備)하면 |
| ③ 대비(對備)하면 | ④ 예비(豫備)하면 |
| ⑤ 정비(整備)하면 |            |





정지환 수능국어  
FRAME

## 1문단 문장별 독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 사실적 독해

권리 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 태도

B하는 A로 권리능력을 정의해주고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 /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 사실적 독해

인과 파악 : 태어남 → 권리능력 → 소유권 주체, 채권 누림, 채무 짐

### 추론적 독해

#### 1. 권리 능력의 특징

- '저절로' : 자동적으로 생긴다.
- '생존하는 내내' 유지 → 그렇다면 사망시 권리 능력은 소멸되겠다.

#### 2. 예시

- 소유권? 채권? 채무? 일단 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술한다면 그때 기억하자.

### 태도

'~서'와 '그리하여'를 통해 인과관계를 파악하자.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사실적 독해

#### 1. 법인격 취득 조건

- 주체 : 사람들의 결합체(단체)
- 조건 : 일정한 요건 충족
- 결과 : 법인격 취득 가능

#### 2. 단순화시켜 새겨 가자.

요건O → 법인격O

### 추론적 독해

권리능력을 자연적으로 취득하는 사람과 달리 단체는 법에 의해 부여받는다.

그 권리능력을 법인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요건이 뭘까? 뒤에서 말해줄 것 같으니 읽어나가며 확인하자.

### 태도

#### 1. 형식적 근거

- ‘도’ : 사람 이외로 주체 확장
- ‘면’ : 조건부 서술

#### 2. 정의

- ‘B하는 A’ 형식으로 법인격 정의
- 법인격 =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

#### 3. 의문과 확인

-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화해주지 않았다. 뒤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확인하자.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 사실적 독해

#### 1. 개념 쌓기

- 사단 : 특정 요건을 갖춘 단체
- 사단성 : 사단이 갖춰야 할 4가지 성질
  - 목적 있는 조직체
  - 독자적 실체
  - 운영 기구
  - 구성원 독립적 존속
- 사원 : 사단의 구성원

#### 2. 개념간 관계

단체 → 사단 → 사원

### 태도

#### 1. 개념 쌓기

- 사단. 사단성 그리고 사원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으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말자. 개념을 쌓아올릴 때는 아래의 블록이 빠져선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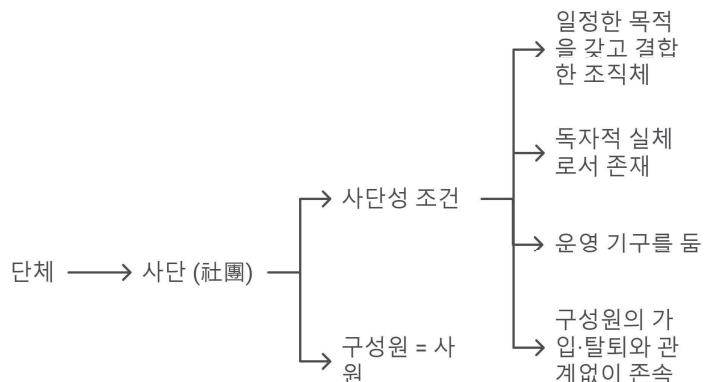
#### 2. 상위-하위

- ‘중에는’ : 단체의 하위 분류에 대한 서술
- 사단과 사원의 관계 파악

#### 3. 조건은 들고가고 세부정보는 돌아와서 확인한다.

### 구조화

#### 사단의 구조와 특성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 사실적 독해

#### 1. 사단의 법인격 취득 (병렬적 서술 → 차이점)

- 법인O 사단 : 법인 등기O → 법인격O
- 법인X 사단 : 법인 등기X → 법인격X

#### 2. 권리 능력의 주체

- 사람과 법인만 해당
- 두 주체는 엄격히 구별
- 사단 법인의 채무는 사단 재산으로만 변제

### 추론적 독해

앞선 의문이 해결된 것 같다.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만 법인격을 가진다. 법인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법인 등기가 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단 법인이 빚을 져도 사원에게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앞서 언급된 ‘사단은 구성원과 구별’된다는 말의 반복이다. 결국 첫문단에서 복선을 깔아두고 복선 회수를 하고 있다.

### 태도

#### 1. 형식적 근거(대비)

- ‘반면에’ : 법인격 유무 대비
- 차이를 만드는 기준 : ‘등기’ 여부

#### 2. 형식적 근거(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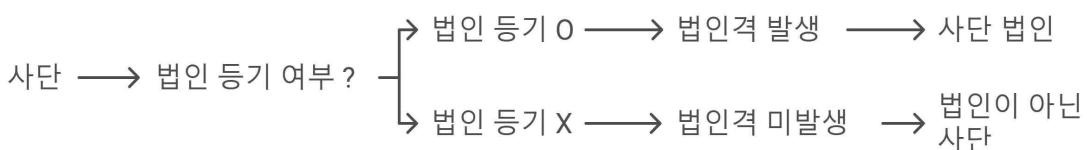
- ‘그리하여’ : 법인격 구별 → 책임 범위 한정
- 책임 소재 : 사단 재산으로 한정

#### 3. 재진술

‘사단은 구성원과 구별’된다는 말의 반복을 눈치채고 위에서 아래의 방향성을 가진 연결하며 읽자.  
만약 위에서 말해준 바를 바로 엮어내지 못했다면 지금 눈치채고 역으로 올라가거나 문제를 보고 엮어내면 된다.

### 구조화

## 사단의 구조와 법인 등기 여부



## 1문단 FRAME

내김(선지 바로 판단 가능)

판상(지문으로 돌아갔다 와서 확실하게 판단)

### 거시 FRAME.

1.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 능력을 가진다. ( $\rightarrow$ 판상)
  - 그리하여( $\rightarrow$ 고정) 재산권, 채권, 채무의 주체가 됨( $\rightarrow$ 판상)
2. 요건(?)을 갖추면( $\rightarrow$ 고정) 단체도( $\rightarrow$ 고정) 조건부로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다. ( $\rightarrow$ 내김)
  - 법인격 취득 가능( $\rightarrow$ 고정)
3. 사단의 특징( $\rightarrow$ 내김)
  - 독자적 실체로 존재( $\rightarrow$ 판상)
  - 구성원과 구별됨( $\rightarrow$ 판상)
  - 구성원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 $\rightarrow$ 판상)
  - 이러한 특징을 사단성이라 함( $\rightarrow$ 내김)
  -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 $\rightarrow$ 내김)
4. 사단의 법인격 취득( $\rightarrow$ 내김)
  - 등기하면(!)( $\rightarrow$ 내김)/사단 법인이 됨( $\rightarrow$ 판상)
  - 반면에( $\rightarrow$ 고정) 등기하지 않으면( $\rightarrow$ 내김)/법인이 아닌 사단이 됨( $\rightarrow$ 판상)
5. 책임의 범위( $\rightarrow$ 내김)
  - 그리하여( $\rightarrow$ 고정) 사단의 빚은 사단 재산으로만 책임( $\rightarrow$ 내김)
  - 개인 사원에게는 책임이 없음( $\rightarrow$ 판상)

### 미시 FRAME.

B하는 A(정의), '서', '그리하여'(인과), '도'(추가), '면'(조건), 상위-하위, '반면에'(차이), 차이를 만드는 기준



## 2문단 문장별 독해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 사실적 독해

#### 1. 회사의 성격

- 사단 법인의 한 종류
- 대표 유형 : 주식회사

#### 2. 주식회사의 특징

- 구성 : 주주들
- 지분 ← 주식 보유 비율

### 추론적 독해

사단 법인의 구체적 예시가 나왔다. 회사가 바로 사단 법인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주식회사를 대표적 예시로 들어주고 있다. 주주들이 모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 주주들이 바로 앞서 말한 ‘사원’에 해당하겠다. 근데 재밌는 건 각자의 권리가 좀 다르다는 거다.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분이 결정된다고 한다. 소유한 주식이 많을수록 지분이 크겠다.

### 태도

#### 1. 연결

- 앞 문단의 사단 법인 → 회사
- 사원 → 주주

#### 2. 형식적 근거

- ‘만큼’: 비례 관계 파악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 사실적 독해

#### 0. 그런데

#### 1. 상법 개정(2001년)

- 변화 : 일인 주주의 회사 설립 허용
- 특징 : 사단성이 불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인정

#### 2. 일인 주식회사

- 설립 : 한 사람의 전액 출자
- 사단성 : 미충족

### 추론적 독해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는 걸 드러낸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바로 법인의 필수 요건이었던 사단성을 충족하지 못해도 법인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충족된 사단성이란게 무엇이었을까? 앞서 사단은 ‘여러 사람이 구성된 단체’라고 했는데 여기선 한 사람만으로도 사단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바로 이 부분이다. 그렇다면 저 상법의 개정으로 예외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의 내용은 원칙이고 이 부분은 예외라고 볼 수 있다

### 태도

#### 1. 변화된 지점

- ‘그런데’: 전환
- B하는 A : 개정된 내용을 정의

#### 2. 원칙과 예외

- 부정어 ‘갖추지 못했다’ 주목
- 원칙을 먼저 읽어내고 뒤에서 예외를 찾아도 좋고  
문득 읽다가 예외를 발견했을 때 돌아가서 원칙을 찾아도 좋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 사실적 독해

### 0. 또

#### 1. 일인 주식회사 형성

- 방식 :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 결과 : 모든 주식이 한 사람 소유

#### 2. 일인 주식회사 특징

- 일인 주주가 대표 이사 겸임
- 회사와 개인의 경계 모호
- 개인 사업자적 성격

## 추론적 독해

일인 주식회사가 되는 또 다른 경로가 나왔다. 처음부터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주식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가 사람에게 몰아주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법인이긴 한데 실제론 개인 사업자같이 운영된다. 왜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지? 뭔가 이걸로 설명하고 싶은 게 있나 보다. 더 읽어보자.

## 태도

### 1. 형식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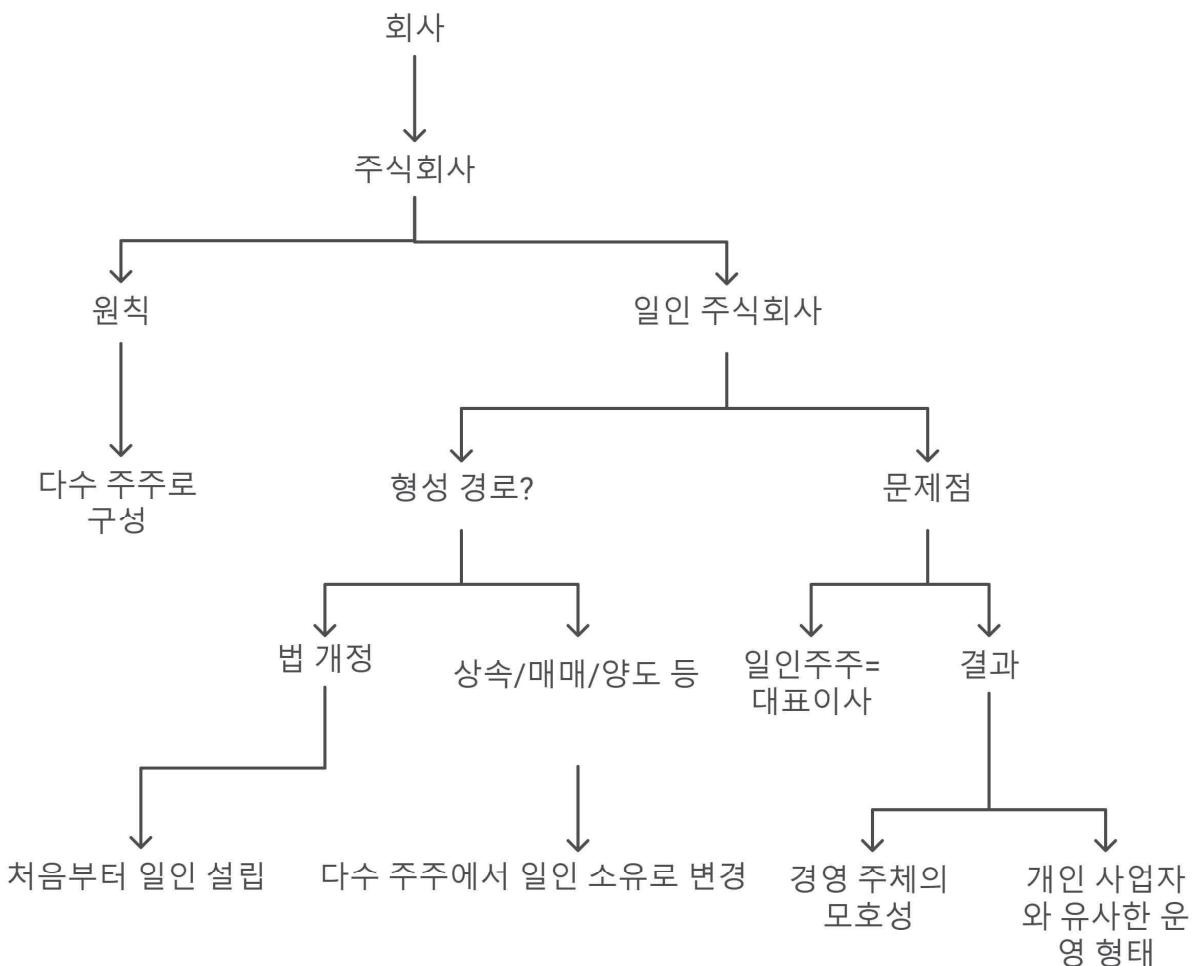
- ‘또’ : 추가(앞서 제시된 상법의 개정 이외에도 다른게 있겠군!)
- ‘면’ : 조건
- ‘A가 아니라 B’ : 대비 (A는 X, B는 O)

### 2. 반복

- 일인 주식회사 형성 과정
- 회사의 개인 사업자화



## 주식회사의 구조와 문제점



## 2문단 FRAME

### 거시 FRAME.

1. 회사는 사단 법인의 한 형태(**→내김**)

-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내김**)
- 주식 비율에 따른 지분 보유(**→판상**)

2. 일인 주식회사의 두 가지 형성 경로(**→내김**)

- 2001년 **상법 개정**부터 한 명이 설립 가능(**→판상**)
- 또(**→고정**)상속, 매매, 양도 등을 통해(**→판상**) 여러 주주에서 **한 명 소유로** 변경되는 경우(**→판상**)

3. 일인 주식회사의 특징(**→내김**)

- 일인 주주가 **대표 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음(**→내김**)
- 개인과 회사의 경영 주체가 **모호해짐**(**→내김**)
-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고정**) **개인 사업자와 유사**(**→판상**)

### 미시 FRAME.

B하는 A(정의), '만큼'(비례), '그런데'(전환), '또'(추가), '면'(조건), 부정어



### 3문단 문장별 독해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 추론적 독해

앞에서 일인 주식회사의 사례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 개인이 혼자 주식을 다 가지고 대표 이사까지 겸하게되면 사람의 인격과 법인의 법인격이 구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일까?

#### 태도

1. 정의(B하는 A)
  - 인격과 법인격의 구분문제를 읽어내자.
2. 의문과 확인
  - 왜 문제인지 구체화되는 부분을 기대하자.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사실적 독해

#### 1. 회사 운영 기구

- 이사회 : 유일한 업무 집행 의결 기관
- 대표 이사 : 이사 중 한 명 이사회에서 선출
- 주주총회 : 이사 선임·보수 결정 기관

#### 2. 의사결정 체계

- 이사회 : 업무 집행 의결
- 주주총회 : 이사 관련 사항 결정(선임과 보수)

### 태도

#### 1. 개념 쌓기

- 이 부분을 읽고나서 이해까지는 아니어도 꼭 처리까지는 해두어야 한다.

+ 낯선 개념의 이해 (from 지문)

이사회도 대표이사도 기관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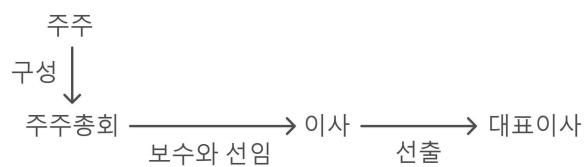
기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사람이어도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뒤에서 기관을 서술해 준다면 그때 돌아와서 연결짓자.

#### 2. 형식적 근거

- ‘만’ : 한정
- ‘또한’ : 추가
- ‘그리고’ : 연결

### 구조화

### 주식 회사 구성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P)가 발생하기도 한다.

### 추론적 독해

앞서 제시된 일인 기업의 주인이 주주이자 주주총회이다. 그리고 그 주인은 스스로 자신을 이사로 결정하여 업무 집행의 의결을 진행하고 심지어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출한다. 그렇다면 주주가 의결기관이자 선출된 기관이겠다. 이때 회사의 운영은 이 사람의 개인사업과 다름 없다. 따라서 결국 회사는 허울뿐인 존재가 되었다. 이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일인 기업과의 거래를 하던 사람들의 피해이다. 어떤 피해가 생기는걸까? (혹시 첫 문단의 ‘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언급한 바가 이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뒷 문장을 읽으며 확인해보자.

### 태도

#### 1. 구조

- 문제-해결

#### 2. 재진술

- 일인 기업이 문제가 됨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 3. 형식적 근거

- ‘면’: 가정
- ‘뿐’: 한정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S)이 제기 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평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여/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P)라고 보는 것이다.

## 사실적 독해

### 0. 이때

#### 1. 법인격 부인론

- 범위 : 특정 거래 관계에 한정
- 성격 : 예외적, 일시적
- 효과 : 회사와 주주를 동일 주체로 간주

#### 2. 법적 근거

- 명시적 규정X
- 권리 남용 조항O

## 추론적 독해

법인격 부인론이 해결책이겠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더 생각해보자. 일인 주주로 이루어진 회사는 주주 총회, 이사회의 운영이 전부 그 한 사람(사원이자 주주이자 이사회)에게 종속되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를 바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법인격 책임을 그 사람이 지지 않고 법인이 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한사람(사원이자 주주이자 이사회)은 자신의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다시말해 그 법인이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법인격 부인론을 통해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면 그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태도

### 1. 구조

- 문제 : 법인 제도 남용
- 해결 : 법인격 부인론

### 2. 개념 연결

- 첫 문단에 제시된 전제와 이 부분을 연결해야한다.  
잘 안되었더라도 일부분을 읽고나서 올라가 연결해도 되고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돌아와서 연결해도 좋다.



### 3문단 FRAME

#### 거시 FRAME.

1. 인격과 법인격의 분간X ( $\rightarrow$ 내김)
2. 상법상 회사의 구조 (개념쌓기) ( $\rightarrow$ 내김)
  - 이사회만( $\rightarrow$ 고정) 업무 집행 의결 기관( $\rightarrow$ 판상)
  - 대표이사는 이사 중 선출( $\rightarrow$ 판상)
  - 이사 선임과 보수는 주주총회가 결정( $\rightarrow$ 판상)
3. 일인 주식회사의 문제점( $\rightarrow$ 내김)
  - 이사회와 주주총회 기능 퇴색( $\rightarrow$ 판상)
  - 회사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귀속( $\rightarrow$ 판상)
  - 거래 관계자들의 재산상 피해 발생( $\rightarrow$ 내김)
4.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해결책( $\rightarrow$ 내김)
  - 특정 거래만( $\rightarrow$ 고정)
  - 예외적으로( $\rightarrow$ 고정) 일시적 적용( $\rightarrow$ 내김)
  - 명시적 규정이 아니지만( $\rightarrow$ 고정) 권리 남용 조항O ( $\rightarrow$ 판상)
  -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 $\rightarrow$ 내김)

#### 미시 FRAME.

재진술, 만(한정), 그런데(전환), 이처럼(연결), 면(조건), B하는 A(정의), 부정어, 문제-해결



## 1. 지문에서 강조된 정보(새김)는 직접 활용하고 부수적 정보(잔상)는 맥락을 재확인한다.

**정답해설** 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취득해야 한다. 사단이 아닌 법인격이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법인격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 지문독해 FRAME

#### 재진술 + 정의

첫 문단을 독해할 때 법인격과 권리 능력의 관계를 명확히 읽어내야 했다.

### 선지선택 FRAME

#### 인과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은 법인격을 통해 부여된다.

#### 오답해설

- ① 사단성의 요건 중 하나로 ‘운영 기구를 둔다’가 명시되어 있다. 사단성의 요건을 확인하며 바로 귓자.
- ② 주식회사는 사단 법인이고 주주는 사원이다. 회사의 성격을 파악할 때 이미 읽어왔다.
- ③ 법인격을 가진 존재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된다’고 첫 문단에서 언급했다. 재산권 관련 내용은 돌아가서 확인하자.
- ④ 사단성의 정의에서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이 언급되었다. 사단성 요건은 이미 읽어왔지만 그 세부 개념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 돌아가서 확인하자.

## 2. 우린 이미 키워드를 파악하며 읽어왔다.

**정답해설** ① ‘기관’이라는 생소한 표현이 등장할 때 주목했으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라는 직접적 진술이 근거가 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 지문독해 FRAME

#### 정의 + 연결

‘또한’을 통해 추가된 대표 이사의 정의를 놓치지 말자.

### 선지선택 FRAME

#### 정의

A는 B이다.

#### 오답해설

- ② 일인 주식회사도 법인이므로 법인격은 회사가 갖는다. 법인격 보유 주체를 확인하자.
- ③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한다. 의사결정 주체 부분으로 돌아가자.
- ④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은 이사회뿐이다. ‘만’이라는 한정 어에 주목하자.
- 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는 내용을 ‘또’라는 접속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 그래서 결국 문제가 뭐였을까?

**정답해설** ⑤ 지문에서 반복해서 제시되었다. 회사의 주주가 단 한사람이기에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기능이 퇴색된 상태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 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

### 4. 문제에 대한 해결책(바로 골라내자)

**정답해설** ⑤ 거래에서 피해를 입하고 책임을 부인하며 법인에게 화살을 돌리는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 되었다.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 된다.

### 지문독해 FRAME

#### 재진술

반복해서 일인 기업의 문제를 제시하고 구체화했다.

### 선지선택 FRAME

기호를 확인하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바로바로 긋는다.

#### 오답해설

- ① 사원은 사단의 구성원이고 그 둘의 권리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분된다.
- ②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는다. 왜냐하면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사원의 권리능력은 엄격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 ③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단체가 사단이다.
- ④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 지문독해 FRAME

#### 재진술

반복해서 일인 기업의 문제를 제시하고 구체화했다.

#### 오답해설

- ① 회사는 원래 이사회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진다.
- ② 법률의 개정이 아닌 권리 남용 조항으로 도입되었다.
- ③ 법의 도입 근거를 파악하자. 법률인지 판례인지 등등 구별해야 할 때가 있다.
- ④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박탈이다.
- ⑤ 개인의 권리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법인격을 부정한다.



## 5. 어휘

**정답해설** ② ㉠의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비(具備)하다’는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다’의 뜻이므로 ㉠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구비하다’로 볼 수 있다.

### 오답해설

- ① ‘겸비(兼備)하다’는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의 뜻이다.
- ③ ‘대비(對備)하다’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다’의 뜻이다.
- ④ ‘예비(豫備)하다’는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다’의 뜻이다.
- ⑤ ‘정비(整備)하다’는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다’의 뜻이다.

